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대분류 영역별 수준

대분류영역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별 개수	★★★★★	★★★★★	★★★★★	★★★★★	★★★★★
점수	91점	100점	100점	92점	85점

- ▶ 별개수 : 환산점수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5개(☆☆☆☆☆)부여,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최대 5개(★★★★★) 부여,
40점 미만은 별개수는 표시하지 않고 환산점수만 표시
- ▶ 점수 :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한 점수(소수점이하 표기하지 않음)

초록빛실버센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 기 요 양 기 관 명	초록빛실버센터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34136000097
급 여 종 류	방문요양	대 표 자	이실영
평 가 년 도	2024	평 가 등 급	정기평가 A(최우수)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20.00	9.00	22.00	31.00	18.00	
점 수	93.35	18.25	9.00	22.00	28.75	15.35	
전체평균	80.63	13.91	8.28	19.20	25.53	13.6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 ※ 제출방법 : ① 방문, 우편, 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2호 서식)
②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본

